

전주효문중학교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신고 안내

2025. 1.



국세청

2025 2024 귀속분
달라지는 연말정산

13월 보너스를 향해!!

연말정산

출산·양육지원 주거부담 완화 기부·소비진작

The illustration shows a woman in a pink suit pointing upwards and a man in a blue vest holding a document labeled '연말정산'.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office-related items like papers, a calculator, and a computer screen displaying '13월 보너스를 향해!!'. The bottom of the illustration features three icons: a woman with a child for '출산·양육지원', a house for '주거부담 완화', and a hand holding a heart for '기부·소비진작'.



전주효문중학교
HYOMOON MIDDLE SCHOOL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0일(월)부터 ~ 1월 23일(목)까지입니다”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 **2025년 1월 23일(목)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5년 5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함.)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025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

-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등 종합안내 참고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수) 오픈될 예정임**
(초기 접속시 파일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 20일(월) 이후에 PDF파일 다운로드 권장**)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 **2025. 1. 15.(수) 이후**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JB메신저** 및 **학교누리집 >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JB메신저** 및 **학교누리집 > 공지사항** 확인 후 입력 요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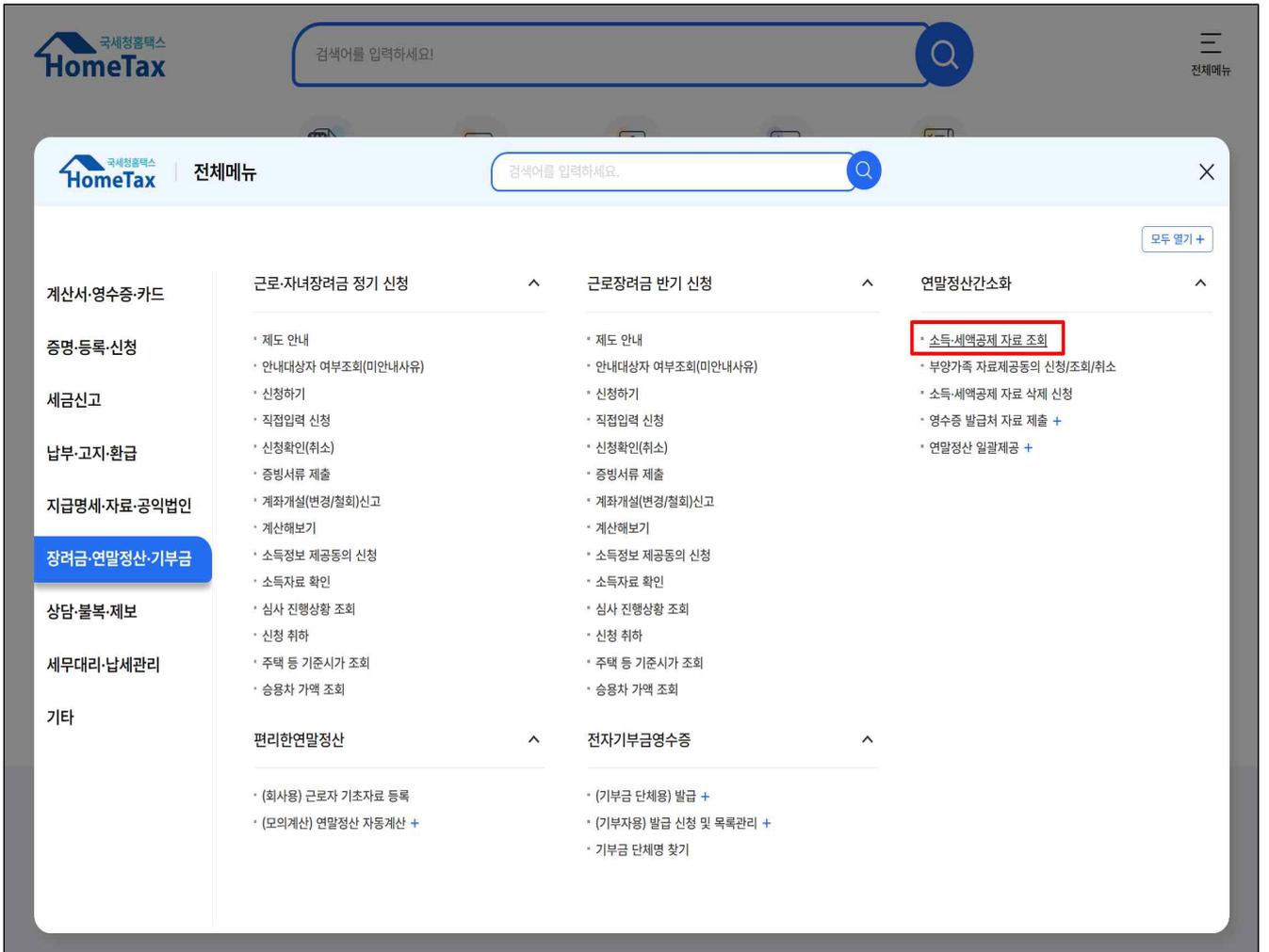
I. 국세청 전자파일(PDF) 다운로드 방법	1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선택	1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2
II.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4
1. 근로소득 확인	4
2. 정산공제자료 등록	5
3.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13
4. 기부금명세서 등록	14
5. 연금저축공제 등록	15
6. 월세명세서 등록	16
7. 신용카드 등 명세서	17
III. 증빙서류 제출	18
1. 연말정산 신고자료	18
2. 부양가족 신고자료	19
IV. 서식	
[붙임1] 확인서	20
[붙임2] 부양가족신고서서식 변경사항	21
[붙임3]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	22

1

국세청 전자파일(PDF) 다운로드 방법 (정산대상자)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선택



다음 페이지 ⇨

2.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전체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증명·등록·신청 | 세금신고 | 납부·고지·환급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상담·불복·제보 | 세무대리·납세관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 월 해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안함 공개함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설정함

내려받기 | 인쇄하기 | 전자받기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 해주세요!

-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100,000 원	90,909 원	9,090 원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내려받기” 클릭
-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스에서 PDF업로드 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업로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

☑ 꼭 읽어주세요

☑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전체 선택 초기화 ↻

건강보험/고용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주택자금 ✓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	장애인증명서

닫기
PDF로 내려받기

- 내려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PDF로 내려받기” 클릭

※ 국세청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세 PDF파일을 제공하지만, 나이스에서는 1개의 PDF 파일만 업로드하면 처리된다.

1. 근로소득 확인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2

공람함 0

예결함 3

기결함

반려함 2

메시지함 0

기본 메뉴

권한관리

복무

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동역서

근로소득확인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의 기부금명세서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

나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확인

*귀속연도 2024

*구분 종전(현)근무지자료

2025.01.03

2024년도 종전(현)근무지 자료

강원도교육청
오리온 : 7급/지방전산주사보/09호봉/10년

Page : 1 / 1

급여연월	근무 시작	근무 종료	급여총액	실액총액	비과세총액	그 밖의 비과세	조세조정대상 금액액	문소기입취급 소득세입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급 (사학연금)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특세
202401			4,166,280	60,000	170,000	0	0	0	382,270	0	0	545,210	70,540	7,050	0
202402			4,093,200	1,479,750	170,000	0	0	0	382,270	0	0	545,210	92,790	9,270	0
202403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404			2,295,600	48,000	24,000	0	0	0	382,270	0	0	0	22,430	2,240	0
202405			813,990	0	0	0	0	0	0	0	0	0	0	0	0
202406			3,772,510	60,000	170,000	0	0	0	382,270	0	0	545,210	85,940	8,590	0
202407			-407,000	0	0	0	0	0	0	0	0	0	0	0	0
202409			1,490,730	0	0	0	0	0	0	0	0	0	0	0	0
202412			0	0	0	0	0	0	0	0	0	0	0	0	0
현근무지합계			17,025,310	1,647,750	534,000	0	0	0	1,529,060	0	0	1,635,630	271,750	27,150	0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2)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한 경우, 2024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3) 급여담당자가 등록한 기타소득 자료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24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0

메시지함 0

기본 메뉴

권한관리

복무

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동역서

근로소득확인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의 기부금명세서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

나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확인

*귀속연도 2024

*구분 기타소득등록자료

2025.01.03

2024년도 기타소득 자료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강원호 : 5급/지방행정주사/15호봉/20년

Page : 1 / 1

소득일자	소득금액	비과세금액	비과세구분	급여구분	소득사유
2024.03.01	1,500,000	0	그밖의비과세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2024.05.01	1,000,000	0	그밖의비과세	성과상여금1	상여금
2024.06.01	1,000,000	0	그밖의비과세	월급여	급여 소급
2024.11.01	600,000	0	그밖의비과세	월급여	급여 소급
합계	4,100,000	0			

※ 근로소득 확인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2. 정산공제자료 등록

1) (개인별)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종이없는 연말정산)

-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PDF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PDF 파일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PDF파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한다.
 - ※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 가능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일괄내역 업로드에 업로드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내역 업로드도 가능하다. 업로드 시 기관 담당자가 의료비 등을 일별로 확인 가능
- 업로드 이후 각각의 탭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한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PDF로 업로드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일괄내역 업로드 PDF 파일은 반드시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은 파일만 처리됨

2) 전자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①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24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③ **기본사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 **국적** : 본인의 국적을 등록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팅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리스트에서 해당 국가를 찾아 등록한다.
-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
- **근무기간** :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24.01.01일이 종료일은 2024.12.31일이 반영된다. 연중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임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기타공제**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공제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비과세총액** :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육아휴직수당) 포함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24

공관함 0

예결함 0

가결함

반려함 0

메시지함 0

기본 메뉴

권한관리

복무

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개인동의서

근로소득확인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의 기부금명세서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나의 월세명세서

나의 신용카드명세서

나의 원천징수영수증

호봉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축소]

*귀속연도 2024 [선택]

[조회]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 세액공제/명세 | 소득공제신고서 | PDF업로드 | 원천징수영수증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 마약수사 / 5급 / 15호봉 / 20] [재직]

공무원구분	행정부지방공무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임용일	2024-08-31	현재급임용일	2018-03-01
기관명	강원도교육청	급여직종	지방일반직	현근무년수 변경일		현호봉임용일	2024-08-23
급여직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지방행정주사	차기근무년수변경일		차기 승급일	

[저장]

국적	대한민국	세대주	세대원
총급여액 (비과세제외)	86,816,650	비과세총액	15,290,000

[근무기간변경]

근무기간

현 근무 시작일	2024-01-01	현 근무 종료일	2024-12-30	연말정산구분	중도퇴사
현 근무 감면 시작일	2024-11-01	현 근무 감면 종료일	2024-12-31		

기타소득

소득금액	4,100,000	과세금액	4,100,000	비과세금액	
------	-----------	------	-----------	-------	--

- 6 -

④ **근무지실적**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종전현근무지 소득 및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급여총액 : 2018년부터 그밖의비과세(육아휴직수당) 포함

⑤ **인적공제**에서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⑥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 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⑦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⑧ 인적공제사항에는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항목이 표기된다.

※ 상단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 하단에는 기타 금액을 입력한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 자녀세액, 출산·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에 해당 대상자가 '소득기준 초과' 인 경우, {기본공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아래의 팝업창이 표시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My Tax Deduction Registration) page. It features a table of family members with columns fo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and various deduction categories: '기본공제' (Basic Deduction), '부녀자' (Spouse/Child), '한부모' (Single Parent), '경로자' (Elderly), and '자녀세액' (Child Tax Credit). A pop-up window displays a warning: '알림: 소득기준 초과인 대상자는 기본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Notice: Eligible persons exceeding the income standard cannot select the basic deduction). To the right, a PDF preview of the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본내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2024 Tax Income and Tax Credit Certificate: Basic Details [Income Standard Exceeding Support Family Details]) is shown, including a table of family members and their income status.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이 표기된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 PDF에도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만, 나이스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된다.

※ 자녀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환급받고, 자녀장려금 수령 등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인적공제의 자녀세액 체크를 해제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수 있다.

⑨ **특별공제 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 **주택자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1년 이전) :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 ※ 공제 한도 : 15년 미만(600만원), 15~29년(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기부금이월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이월금에 대하여 입력한다.

※ 이월금이 아닌 2024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 **기부금 이월금 등록 방법**

- 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리 목적으로 입력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 [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이월금을 등록 후 저장한다. 입력된 내용은 기부금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월금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확인 가능

⑩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금액	소기업공제부금	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0		0
주목청약저축	0		0
주목청약종합저축	0		0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0		0
투자조합 출자 등 (F)	0		0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0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0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0
도서·공연 사용액 (E)	0		0
전통시장 사용액 (E)	1,955,087		1,955,087
대중교통 이용액 (E)	0		0
전년도 전체 사용분	0		0
당년도 전체 사용분	0		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0		0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0		0
합계	0	400,000	400,000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액이 표기된다.
- 소기업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마련저축 : 아래 저축별로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라 납입. 연 3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 월 15만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입력하였지만 소득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투자조합출자 : 거주자/개인에 따라 2018년도 이후 출자·투자분이 표기된다.
 - 10%에 입력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총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 2022년부터는 3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에 표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인적공제에 등록된 금액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조회 됨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적립식 펀드 납입 금액 입력(600만원 한도, 40%공제)

① **세액공제/명세 탕**에서는 세액공제 내역을 등록하고, 세액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귀속연도 2024

기본사항 근로자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실손보험금은 세금계산 시 의료비에서 자동 제외된 후 계산됨,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있음(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본인·장애인 교육비(전액),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교생(300만원), 대학생(900만원), 교복구입비(50만원), 현장학습비(30만원) 공제한도
 ※(E)항목은 인적공제 탕, (F)항목은 연금지축지급내역등록, (G)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 (H)항목은 기부금명세서 등록에서 입력하십시오.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은 종전(현)근무지 자료에 등록된 조세조약상 감면금액으로 자동 산출되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조특법감면금액(제30조)은 종전(현)근무지 자료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액으로 자동 산출되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조특법감면금액(제30조)은 종전(현)근무지 자료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액으로 자동 산출되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2024년) 저장

연금지축(F)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F)	0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F)	0		
보험료(E)	2,000,000	장애인보장성(E)	0
본인(실손의료비제외)	1,258,00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0
65세이상·특례·장애인의료비(실손의료비제외)	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실손의료비제외)	0
의료비(의료비지급내역)	3,005,500	난임시술비(그밖의대상자)	0
난임시술비(본인)	0	실손의료비	4,200,000
산후조리원의료비	0	출산횟수(그밖의대상자)	0
출산횟수(본인 등)	0		
교육비(E)	0	취학전아동+유초중고교육비	0
본인교육비	0	장애인교육비	0
대학교육비	0		

- 연금지축(F) - 연금지축지급내역등록에서 등록된 내용이 표기됨
 - 연금지축 : 2001.1.1. 이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표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E) -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나누어 표기됨
 - ※ 2018년도부터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입력
 - 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고으로 나누어 표기됨
- 기부금(H) - 기부금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월세액(G) : 월세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조특법세액감면(제30조)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탕)**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액 금액 표기
- 조세조약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탕)**에 등록된 조세조약상 감면급여액 금액 표기
- 소득세법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PDF상 해당 금액 표기

⑫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1))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강원호	주민등록번호	760601-1033228
근무처 명칭	강원도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32
세대주 여부	세대원	국적	(국 적 코 드 : KR)
근무기간	2024.01.01 ~ 2024.12.30	감면기간	2024.11.01 ~ 2024.12.31
거주구분	[O]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본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근로소득자 본인인 환자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	성명	소득금액	기본공제	장려금	환급액	공제액	과세액	보험료				의료비		
								건강	고용	보장성	장래의			
내국인	주인등록번호	연간소득	부양가족	공제액	과세액	과세액	과세액	건강	고용	보장성	장래의	의료비	4대보험	
0	강원호	750101-1234567	1	0	0	2,333,970	100,000	2,000,000	2,333,970	100,000	1,258,000	1,258,000	3,005,500	4,200,000
1	강아빠	420101-1234567	0	0	0	2,333,970	100,000	2,000,000	2,333,970	100,000	1,258,000	1,258,000	3,005,500	4,200,000

⑬ 결과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 < 2024. > < 개정안서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 리 번 호		거주구분	거주지(1)비/거주지(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보유기간	내국인/외국인
		외국인납세유형	01/부2
		외국납세소득 기간종류	01/부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01/부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연말정산 구분	종도유자

영수	(1)법인명(상 호)	강원도교육청	(2)대 표 자(성 명)	윤광원
	(3)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32	(4)주 문 통 록 번 호	7712101-558855
	(5-1)사업자간위탁과세 여부	예 / 부2	(5-2)종사업장 동일번호	
	(5)소 재 지(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002		
소득자	(6)성 명	강원호	(7)주민등록번호(과세인등록번호)	760601-1033228
	(8)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상동로 63-1 다스		

구 분	구(단)	종(단)	종(단)	종(단)	(16-1)납세조합	합계
(10)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32	226-82-00097				
(11)1주기간	24.01.01~24.12.30	24.01.01~24.02.29				
(12)납액기간	24.11.01~24.12.31	-				
(13)금액	65,802,670	18,640,000				84,442,670
(14)상대	5,473,980	1,000,000				6,473,980
(15)인정액						
(15-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3.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2) 의료비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계 금액을 기재, 의료증비코드 "1"로 함(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 **안경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1인당 안경구입비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및 수정 필요**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의료비 항목 작성 방법

- 의료비(난임시술비 등 포함) 관련 항목은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4. 기부금명세서 등록

나의 기부금명세서등록

*귀속연도 2024

※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없이 숫자만 입력 해야하며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는 인적공제(법)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명세서 및 정산공제자료에서 이월기부금을 등록하면 세금계산 후 기부금조정명세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Total 1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장려금	공제대상금액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	국세청자료구분
000000-0000000	정치자금	종교단체기부금	1	30,100,000	0	30,100,000	본인	장원호	750101-1234567	그밖의자료

합계(기부금명세서등록금액) 1 30,100,000 0 30,100,000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나의 기부금명세서등록 ⇨ 기부금명세서탭]
-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 4)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 5)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기부금 항목 작성 방법

- 기부금(급여공제 기부금 포함) 관련 항목은 기부금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5. 연금저축공제 등록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3)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 불입금액 중 일부만 공제받고자 할 경우 불입금액을 수정한 다음 저장한다.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연금저축공제 항목 작성 방법

- 근로자퇴직연금, 개인연금, 청약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연금저축 관련 항목은 연금저축공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6. 월세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월세명세서]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나의 월세명세서

*귀속연도 2024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 한도) - 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Total 1

입력 여부	임대인 성명 (성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임대인 계약기간	월세액	공제금액	
						시작일	종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주인	123121-3212312	아파트	37	대구광역시 동구	2024-01-01	2024-12-31	850,000	0

850,000 0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나의 월세명세서

*귀속연도 2024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지(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 금액(750만원(1년 월세액 공제 한도) - 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Total 1

입력 여부	대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시작일	종료일	계	원리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주인	111111-1111111	2024-01-01	2024-12-31	4.50	655,000,000	600,000,000	27,000,000	262,000,000

합계(공제금액) 262,000,000

임대차 계약내용 Total 1

임대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유형	주택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전세보증금
임대인	111111-1111111	아파트	5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24-01-01	2024-12-31	100,000,000

100,000,000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작성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작성한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2018년도부터 월세명세서 항목 작성 방법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임차금 관련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7.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기본 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 2)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내역을 조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소속공제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소화여부	서식	카드사용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상호명	합산월별공제금	공제대상1월금	공제대상2월금	공제대상3월금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도서공연등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180,00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도서공연등	202-81-48079	HH카드	74,00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대중교통	202-81-48079	HH카드	83,54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전통시장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402,00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전통시장	202-81-48079	HH카드	78,00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일반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4,484,64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신용카드	일반	202-81-48079	HH카드	8,067,017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000-00-00000	현금영수증	100,000	0	0	0
<input type="checkbox"/>	본인	강원호	760601-1033228	Y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000-00-00000	현금영수증	382,610	0	0	0

※ 20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항목 작성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 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일괄 등록됨
-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메뉴의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액 공제금액(1,000만원(1년 월세액 공제한도)-월세명세서 기등록 월세액 합계)을 삭제 후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등록하여 월세액으로 공제 처리
- 예)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된 주택임차료가 860만원이고 월세명세서에 기등록한 월세액이 600만원일 경우
 월세액 공제한도 1000만원 - 기등록 월세액 600만원 = 400만원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400만원을 삭제하고 월세명세서에 400만원을 추가 등록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860만원 - 400만원 = 460만원만 작성 후 저장

▣ 증빙서류 [연말정산 신고자료] 제출

구분	나이스 자료등록 기한		2025년 1월 23일(목) 까지
	서류 제출 기한		
	제출서류	제출여부	방법
개인 공제	① 소득공제신고서	필수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탭 ⇨ 귀속년도(2024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필수	☞ 정부24 : http://www.gov.kr ☞ 소득공제용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③ 확인서	필수	[붙임1] 작성 후 출력 서명 제출
	④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필수	☞ 국세청 자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국세청 PDF전자파일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인적 공제	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선택	☞ 대법원 전자기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기타 공제	⑥ 의료비공제 신고서	선택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4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⑦ 기부금공제 신고서	선택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4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⑧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교육비명세서	선택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 ⇨ 귀속년도(2024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4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부양가족 신고자료] 제출

구분	서류 제출 기한		2025년 1월 23일(목) 까지
	제출서류	제출여부	방법
개인 공제	① 부양가족신고서	선택 (거주를 같이하고, 동시에 같은 등본상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붙임2] 작성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양대상가족이 있는 경우)	☞ 정부24: http://www.gov.kr ☞ 소득공제용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 연말정산 신고자료로 제출시 생략
	③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배우자가 등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정부24: http://www.gov.kr ☞ 소득공제용 1통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④ 부부공무원등 가족수당수령 동의서	선택 (배우자가 공무원 등 인 경우)	[붙임3] 작성 후 출력 서명 제출

확 인 서

소 속 : 전주효문중학교

1.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2024년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시 공제 신청한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 교육비 공제 등은 다른 근로소득자에게 이중 공제를 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신청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3.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약국·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종교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 지겠습니다.
4.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5. 본인의 증빙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달에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산을 받겠습니다.

2025. 1. .

확인자

(인)

전주효문중학교장 귀하

